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2차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 1. 27.)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

* 사업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 개 요

○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 운영비는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 포함(자산취득 및 전산개발비는 불가함)

※ 자부담금 20%는 협회·단체 자체기금, 협회·단체의 회원사 회비, 지자체 등 지원금, 대기업 상생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

-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 12월

○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공공기관, 학교(단체)는 참여 불가

-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는 다수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지원 사업장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 명 채용가능

○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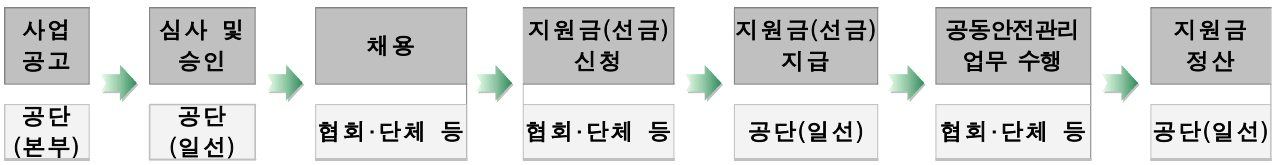

3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

○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❶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직접 방문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소 사업장 수는 10개소 이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공동안전관리자는 사업장당 월 1회 이상, 월 총 15회 이상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 담당 사업장 수 및 월 최저 총 방문컨설팅 횟수는 공단 일선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공동안전관리자는 공동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며, 겸직은 허용하지 않음

❷ **(담당자 지원)**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정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원

※ 사업장 점검 시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순회·점검 실시

❸ **(담당자 역량강화)** 안전관리 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 교육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실시 지원
-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교재 준비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TBM 등 교육 지원

<공동안전관리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주요수행 내용>

단계	주요 수행 내용
1단계-기반구축 (담당자 지정/ 사전교육)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 -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별로 담당자 지정, 명확한 미션 부여 ▸안전보건교육·훈련 -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2단계-현장안착 (담당자 역할수행 지원)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 담당자 조치사항 지속적 숙지 -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담당자 1:1 안내 후 자체 점검수행 지원)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설계* 지원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설계
3단계-안전관리체계구축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 리더십 계발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심 유도 -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안전 투자 조언 ▸근로자 참여 안내 - 안전 제안제도 운영 - 위험성평가 참여

※ 단계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지원

2. 지원자격

1 협회 · 단체 등 자격기준

< 대상 세부구분 >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들로 구성된 단체 *** 연합회, 지역조합, 사업조합 등**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및 정관
사업주단체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사단법인) 설립인가증 및 정관 ·(일반등록) 고유번호증(법인) 및 정관
협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원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 또는 관리업무의 전부·일부를 위탁받은 단체	
기타 단체	기타 2인 이상 사업주로 구성된 비영리사업단체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관리전문기관, 공공기관, 학교(단체)는 참여 불가

2 공동안전관리자 자격기준(사업 공고일 기준)

○ **(자격)** ※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충족한 자

* 안전실무 경력확인은 사업주(협회·단체) 대표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로 판단

** 관리감독자 경력확인은 경력증명서(대표 직인) 및 교육이수증으로 판단

○ **(전환)** 공동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협회·단체 등 소속 직원, 공동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직원 등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하는 경우

-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되 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동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위배 시 지원취소**)

○ **(환수)** 공단은 지원 협회・단체 등, 공동안전관리자 등이 지원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협회·단체 등 (고용주)	○ 사업주 단체로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 휴면, 해산, 휴면건의, 해산건의, 휴폐업, 파산 조합 2) 설립 이후 2회 이상 총회를 미개최한 협회·단체 등 ※ 2023년 이후 설립된 협회·단체 등은 적용제외 3) 단체의 장, 상근이사 2명 모두 공석인 조합(신청일 기준)
공동안전 관리자 (근로자)	○ 만18세 이상(2007. 1. 20.이전 출생자)으로 기준공고일(2025. 1. 20.) 이후 고용된 근로자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협회·단체 소속 직원 전환할 경우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이 불가함 1)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 인건비 사업 수혜근로자 2)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이거나, 타 기업 근무 중인 자 3) 채용 예정 단체의 장 또는 상근이사의 직계존비속인 자(범위는 민법에 따름) 4) 채용 예정 단체의 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참여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 재직 중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5. 1. 20.(월) ~ '25. 2. 21.(금) 17:00까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음

* 천재지변, 사업내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공지하여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공지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게시 예정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협회·단체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제출하되,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협회·단체는 희망지역 공단 일선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별첨 1, 2 참조)

✓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해당 단체에 한함) 1부
  -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해당시) 1부
✓ 단체(사업자)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 **(서류접수)** 공단 관할 일선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

공단 관할 일선기관 연락처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44-3088)** 및 **관할 일선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클린사업장 조정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기관명(소재지)	관할 지역	대표전화
1	**서울광역본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97
2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2층)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35
3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7층)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4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35 소노타워 4층)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28
5	**강원동부지사** (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182(교동, 정관빌딩) 3층)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12
6	**부산광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7층)	부산광역시	051-520-0683
7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정동로 83 4층)	울산광역시	052-226-0530
8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3
9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4층)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6
10	**광주광역본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8, 9, 11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27
11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4층)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41
12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7층)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31
13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3
14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2층)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5
15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6
16	**대구광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0~21층)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053-609-0553
17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5층)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37
18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3)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6
19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5
20	**인천광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인천광역시	032-5100-524
21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3층)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25
22	**경기남부지사** (경기 평택시 칠괴길 87, 2-3층)	경기도(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690-1934
23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1층)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3
24	**고양파주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805호)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3
25	**경기서부지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2층)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14
26	**경기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17번길 3, 2층)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8
27	**경기중부지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19, 3층)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26
28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8
29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 3층)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2
30	**충북북부지사**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4
31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 3층)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4

※ 접수장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공지 예정

5. 선정방법

○ (선정일정) '25. 2. 24.(월) ~ 28.(금) 중 1일

* 신규 선정기관에 한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선정방법)** 공단 일선기관에서 선정심의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이상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

- '24년 사업에 참여한 협회·단체 중 수행인력*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필요시 선정 절차 등 심의 간소화

* '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제 수행한 공동안전관리자 인력임

○ **(선정절차)** 안전보건공단→협회·단체 등

신청.접수		서류접수		서류심사		심의평가		대상 선정
참여 협회·단체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자격요건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통보, 약정 체결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안내
<공단 본부>		<일선기관>		<일선기관>		<일선기관>		<일선기관>

○ **(선정기준)**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실시

구 분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 기준	점수
정량평가 (30)	조합운영 및 공동사업	총회 개최 여부 (5) (최근 2년 '22~'23년)	2회 이상 정상 개최	5
			2회 미만 개최	2
		단체의 장, 상근이사 공석 여부 (5) (사업 신청일 기준)	공석 없음	5
			1인 공석	0
		조합연혁 (5) (사업 신청일 기준)	설립인가후 15년 이상	5
			설립인가후 12년~15년 미만	4
			설립인가후 9년~12년 미만	3
			설립인가후 6년~9년 미만	2
			설립인가후 3년~6년 미만	1

	(30)		설립인가후 3년 미만	0
		법정 발기인수 대비 조합원 (5) (사업 신청일 기준)	증가율 100% 이상	5
			증가율 80% 이상 100% 미만	4
			증가율 60% 이상 80% 미만	3
			증가율 40% 이상 60% 미만	2
			증가율 20% 이상 40% 미만	1
			증가율 20% 미만	0
		공동사업 수익 총액 (10) (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	사업수익 3억원 이상	10
			사업수익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
			사업수익 5천만 이상 1억원 미만	8
			사업수익 1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	7
			사업수익 1천만원 미만	6
정성평가 (70)	**채용 및 사업 추진 (70)**	공동사업 현황 및 신규 채용 필요성 (30)	매우 우수	30
			우수	25
			보통	20
			미흡	15
			매우 미흡	10
		채용 후 직무수행 및 동 사업 추진 계획 (30)	매우 우수	30
			우수	25
			보통	20
			미흡	15
			매우 미흡	10
		근로환경, 교육훈련 복지제도 등 (10)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 **(결과발표)** 선정심사 후 결과를 공단 일선기관 홈페이지에 발표 (선정 협회·단체 등에 개별 통보)

※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는 비공개함

6. 사업예산

○ **(사업예산)** 120억원

○ **(지원금 선금 신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회·단체 등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후 선금을 신청(협회·단체 등→공단)

- **(신청시기)** 공동안전관리자를 신규 채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협회·단체 등→공단)

※ 기존 직원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청서류)** 지원금 신청 공문, 근로계약서, 지원금 지출예상 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최근 1년)

- **(신청방법)** 방문, 우편(등기) 또는 E-mail로 신청

- **(지급결정)** 선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 통지 및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중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 지급이 가능하고, 잔여 지원금을 연말에 정산 처리

○ **(중도퇴사)** 공동안전관리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사 시 퇴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고, 정산 이후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 정산 신청 시 재참여 여부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재참여 시 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결과를 제출하되, 선지급 없이 연말 정산 처리

○ **(정산)** 연말 정산 시기, 방법 등은 공단의 지출마감 일정, 서류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시행

7. 기타사항

1 전문인력 채용(협회 · 단체 등)

ㅇ 채용 절차

채용공고		근로자선발		근로계약 체결
구인 공고등록(공개) 및 입사지원 (근로자→협회·단체 등)	⇨	채용 전형 등 공정선발 (협회·단체 등)	⇨	근로계약 체결 (협회·단체 등↔근로자) 채용통보(협회·단체 등→공단)

ㅇ **채용 통보 시기**: 근로자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협회 · 단체 등→공단)

※ 근로개시 이후에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 사업 참여 취소

ㅇ 채용 통보 서류

협화단체 등	ㅇ 공문 및 근로자 채용 통보서 ※ 개인 정보는 가림처리(주민번호 뒷자리) ㅇ 공동안전관리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1부
공동안전 관리자	ㅇ 공동안전관리자(개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교육이수증, 타법령 안전관리 책임자 증빙서류 ※ 개인 정보는 가림처리(주민번호 뒷자리)하고, '24년 공동안전관리자는 제출 생략 ㅇ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

ㅇ 근로 조건

1) 4대 보험 필수 가입
2) 공동안전관리자의 근무는 협회·단체 등과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 적용 가능
3) 근로계약서는 첨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
4) 급여는 '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이상 지급
5)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조합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조건이 사업 참여 기준과 다를 경우 지원 불가

2 공동안전관리자 교육(안전보건공단)

ㅇ 전문화 교육은 공단에서 집체교육과 이러닝 교육을 구분하여 진행

< 교육내용 및 시간(안) >

교육내용	교육시간(hr)
계	40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0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6

[별첨 1] 참여 신청서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단체명	*예시) OO협의회*	대표자명 (생년월일)	*홍 길 동* *(1900.00.00)*
소재지	*(00000) 서울광역시 중구 00번길 0000*	전화번호 (FAX)	*02-0000-0000* *(02-0000-0000)*
사업자(단체) 등록번호	*000-00-00000*	단체 설립일	*0000.00.00.*
신청지역 (수행희망)	( )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채용인원 (예정)	*00명* *(신규채용 00명, 직원전환 00명)*

참여단체 현황	협회·단체 등 유형	채용인원(예정) 현황
	☐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단체 ☐ 중소기업중앙회 소속단체(연합회, 사업조합 등) ☐ 전국 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 전국 산업단지관리기관협의회 ☐ 전국 상공회의소 ☐ 기타 협회·단체 등(*직접기재*)	☐ 산업안전 실무 2년 이상: 00명 ☐ 관리감독자 경력 1년 이상: 00명 ☐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충족: 00명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0광역(지역) 본부장 귀하

▶ 첨부 서류 붙임

1. 사업계획서 및 단체(사업자) 등록증 또는 단체 증빙서류 각 1부 .

※ 신청지역은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공단 일선기관명【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로 구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참여자 확인 및 지원대상 심의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10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첨 2]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1 기본현황

단체명	*예시) OO협의회*	대표자명 (생년월일)	*홍 길 동* *(1900.00.00)*
소재지	*(00000) 서울광역시 중구 00번길 0000*	전화번호 (FAX)	*02-0000-0000* *(02-0000-0000)*
사업자(단체) 등록번호	*000-00-00000*	단체 설립일	*0000.00.00.*
조합원수	최초(설립일 기준)	*00000명*	
	현재(서류 제출일 기준)	*00000명*	
신청 지원금 (운영비 80%)	*예시) 60,000,0000원*		
임원 현황	*(대표) 홍길동 (oo이사) 홍길순 (oo이사) 홍길석 (oo이사) 홍길태.....*		
조직도	*그림첨부*		

2 주요 활동연혁 및 공동사업 현황

총회 개최 현황 ('23년~'24년)	주요안건 내용
2023. 00. 00.	*예시) 조합비 인상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참여여부 결정 투표 등....*
2023. 00. 00.	
2023. 00. 00.	
2024. 00. 00.	
.	
.	

'24년 공동사업명	수익금액(천원)	발주처	사업내용
총 합 계	500,000천원	-	-
00산업단지 녹지조성사업	*100,000천원*	*00시청*	*예시) 00산업단지 내 녹지조성사업 수행*
.	.	.	
.	.		
.	.		
.	.		

3 인력 운영 및 지원금액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구분	지원금액* (천원)
1	*예시)김동일*	*1980.1.10*	*관리감독자 1년이상*	
2	*예시)김동이*	*1983.7.10*	*산업안전실무 2년이상*	
3	*예시)김동삼*	*1989.8.15*	*산업법상 안전관리자 자격 충족*	
4	*예시)채용예정*	-	-	
5				
6				

* 지원금액은 운영비용의 80% 임

4 사업추진 세부계획(분량 제한 없음)

1. 참여 개요 및 사업 필요성(휴먼명조 14p, 글간격 130~160% 준수)
<필수 작성>

협회·단체 등 소속 지역	0000시 0000군	**주요 업종**	예시) 금속제품 제조업
협회·단체 등 회원사(개소)	0000개소	**회원사 근로자수(명)**	총 0000명
공동안전관리자(1인)당 관리 회원사(개소)	0000개소		
공동안전관리자(1인)당 월 지원 횟수	00회/월		

❍ *내용 작성*(① 신청지역의 산업 특성분석, ② 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 ③ 사업의 필요성)
※ 중고딕(12P)

2.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추진계획 및 직무수행 세부내용(휴먼명조 14p, 글간격 130~160% 준수)
❍ *내용 작성*(①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세부내용, ② 채용계획, ③ 직무 및 역할)
※ 중고딕(12P)

3. 근로환경, 교육훈련, 복지제도 등 운영내용(휴먼명조 14p, 글간격 130~160% 준수)
❍ *내용 작성*(① 공동안전관리자 근무여건, ② 교육훈련계획, ③ 복지제도 운영)
※ 중고딕(12P)

증빙 1 '23년~'24년간 정기총회 개최 결과자료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증빙 2 '24년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증빙 3 단체(사업자) 등록증 또는 단체 증빙서류

※ 관련 증빙자료 첨부

[별첨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6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의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

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